

“일하는 생애를 아우르는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의 개정으로 '23.7.1.부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사다리차를 운전하는 사람
3. 제도 시행 초기 화물차주 산재보험 보험가입자 및 플랫폼사의 제도 인식도, 보험사무 관리의 준비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는 불임과 같이 '23.7.1. ~ '24.6.30. 기간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예정이며, 같은 기간 동안 과태료 등이 면제됨을 알려드리니 주시하시어 회원사 등에 안내 당부드립니다.

불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1부. 끝.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수신자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장, 전국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장, 한국통합물류협회장, 전국24시콜화물 대표이사, 원콜 대표이사, 화물맨 대표이사, 화물복지재단 이사장, 전국화물마당 대표이사, 인성데이터 대표이사

과장	장우영	차장	이원석	부장	강승훈	전결 07/06
협조자	소득기반고용산재보험추진TF-65		(2023.07.06.)	접수		
우	전송		/exitwy11@comwel.or.kr		/ 비공개(5)	
전화	0527047473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계획

□ 추진배경

-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 시행('23.7.1.)에 따라 시행 초기 정책대상자의 제도 인지도 제고, 보험사무관리 준비 등 제도의 원활한 현장 안착 필요성 고려
- 이에, 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 등 신고,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이직 신고 및 월 보수액 등 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완화 등을 위해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

* ①사업장 보험관계 성립·소멸 및 변경 등에 관한 신고의무 위반 시: 300만원 한도 과태료 부과
② 기준보수 적용 노무제공자(건설기계종사자 건설현장 화물차주 골프장캐디(1231까지)의 입·이직 신고 ③실보수 적용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등 신고의무 위반시: 노무제공자 1명당 3~10만원(100만원~300만원 한도) 과태료 부과

□ 운영계획

- (기간) 2023. 7. 1. ~ 2024. 6. 30. (1년), 필요시 연장 검토
- (적용 사업장) ①노무제공자(플랫폼 종사자 포함) 산재보험 적용 **소** 사업장, ②플랫폼 운영자(플랫폼 사업자 포함)
- (적용 대상) '23. 7. 1.부터 '24. 6. 30.사이에 이루어진 노무제공에 대해 발생한 보험관계 성립 등 신고 및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입·이직 신고, 월 보수액 등 신고 관련 사항에 적용
- (적용 내용)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 면제 및 같은 법 제50조제1호, 6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면제
 - 다만,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면제는 자진신고에 대해서만 적용하되, 월 보수액 등 신고 확인 청구과정 등에서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관련 필요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도 과태료 면제
 - 보험급여액의 징수(사유: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 면제는 '23. 7. 1.부터 '24. 6. 30.까지 발생한 노무제공자의 재해에 적용